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나7909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종교단체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관희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석

변 론 종 결 2022. 9. 14.

판 결 선 고 2022. 11. 3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3231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7,400,000원 및 그 중 145,4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M조합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0. 6. 23.부터 2011. 7.

1.까지 피고에게 대출알선 명목으로 15,400,000원을 지급하였고, 대출이 실행된 2010. 9. 9.에도 피고에게 같은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원고의 재정을 담당하던 G는 2010. 6. 29. 피고에게 원고의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알선 대가의 지급은 ① 정관 및 총회헌법에 따른 P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② 대출알선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피고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③ 당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던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법률상 원인이 없고, G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다.

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출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선교헌금으로서 증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정관 및 총회헌법에 따른 P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②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증여계약 후 원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으로서 합계 147,400,000원(= 15,400,000원 + 130,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M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 및 G로부터 피고에게 일부 돈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의 지급이 정관 및 총회헌법에 따른 P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8,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당시 대표자 J)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된 돈은 당시 서울 구로구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선교헌금 명목으로 송금되어 실제 선교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G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G가 본인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헌금의 송금이 이미 이행된 이상 원고의 증여계약 해제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민법 제558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